6.2 착공전 도로(일시)점용 허가 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인허가 승인 및 신고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필요시 인접한 보안물건(도림천 제방 및 산책로 -구로구청 치수과/가로경관과, 서울교통공사-철도보호구역 내 굴착, 남부도로사업소-시흥대로 등) 간섭 관련하여 공사전 완료해야 하며 인허가 및 공사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입찰하도록 한다.

6.4 작업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안내판 및 신호수(보도 구간에서 공사시 보행자 도우미 등)을 배치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한다.

6.7유관기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야간공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입찰한다.

"6.9 지장물 이설 및 복구

- 상수도이설 구간에 간섭되는 지상지장물은 사전에 파악하여 이설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로인한 비용을 입찰에 포함하여야 한다."
- 6.10 공사 후 평면도 및 종, 횡단면도 등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인허가기관(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승인에 필요한 협의 및 자료제출(도면 등 설계도서 일체, GIS등록 포함) 비용을 입찰에 포함한다.
- 6.1.5 각종 검수/점검에 소요되는 투입인원에 대한 경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자체 부담으로 한다.
- 6.1.8 "수급사업자"는 공사수행 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의 비산이 우려되는 잔여자재는 즉시 반출하며 처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6.1.11 설치 강도 부족으로 발생되는 시설물 보수는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 6.3.2 당 현장은 "출입관리시스템(안면인식)" 적용 예정으로 "원사업자"의 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역 관리를 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 설치 및 사용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한다.
- 6.27. 하자보증기간은 원사업자의 원도급계약 기준 FAC 후 2년이며, 비용을 설비비내역에 포함하여 견적한다.
- 13. 소방펌프는 제작관리 그룹의 제작관리 검정 품목이므로 이에 관련된 금액을 견적시 반영한다.
- 14. 펌프 Setting 후 압력셋팅, 현장테스트, 시운전 및 보고서작성 등을 포함한다.
- 15. 공급범위내 배관, 부속자재 일체, 계장 전기부품 및 결선 일체 포함한다.
- 30. 소방펌프의 주펌프, 예비펌프는 반드시 입형 다단터빈 타입을 반드시 적용하여 견적에 반영 한다.
- 6.1.11 "수급사업자"의 작업부산물 중 특정폐기물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원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7. 납품 시 AS-BUILT도면, 각종 검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 8. 사용 전 검사 지원 및 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9. 수급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제품 운반비, Setting 및 장비사용료는 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되는 제품은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6.5 타일 및 석공사

- 2) 타일 및 석재의 접착제는 첨부된 "원사업자"의 기준과 시방서를 비교해 시공 전 최종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되, 해당 비용은 00내역에 포함한다."
- "6.1.2 현장여건에 따른 견적 시 유의사항
- 8) 리프트카는 각 호기 1층~최상층 운행 기준이며 동/코어별 양중 시간, 인력 등에 대한
-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재야적장은 지하1층에 배치 예정이므로 현장내 지게차 소운반을
- 고려하여야 하며, 자재 운반 및 이동시 신호수 인건를 포함한 해당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 견적한다."
- "6.2가설 공사 및 공통사항
- 공사 수행상 필요한 가시설 비용 (장비사용, 틀비계설치, 해체 및 정리, 작업발판, 비계 등) 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견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 "6.3 미장공사
- 6) 화장실의 휴지걸이 후면에는 미장 작업전 매쉬를 설치하고 자재는 "을"의 부담으로 할 것"
- "6.4.2 시멘트 벽돌
- 9) 조적 사춤은 밀실하게 하여야 하며, 사춤 시공 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별도로 사춤인원을 투입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14) 층고 4.2M 이하 부위는 이동식 틀비계(BT 비계), 4.2M 초과 부위는 작업을 위한 가시설(쌍줄비계, 발판포함)을 "을"의 부담으로 포함하여 투찰한다.
- "6.17 지붕공사시 철골조의 옥상에 퍼린은 철골공사에서 진행하고 이후 진행되는 지붕깔기에 소요되는 각파이프 또는 ㄱ형강 등의 보강자재(부자재 등)는 지붕판넬 내역에 반영한다.
- ROOF-GIRDER에 설치된 빔-포스트는 "수급사업자"측에서 해체하며, 정리 후 안전시설물 창고까지 소운반하여야 한다."
- 6.26 거터 하부에 단열재 및 구조틀, 연결부 용접을 반영하여 견적한다.
- 6.29문틀, 창틀, 후드캡 등의 타공과 주변 단열, flashing 및 trim의 제작, 설치를 반영하여 견적한다.
- "6.1 승강기 개요
- 전호기 가이드 롤러 설치 비용을 견적에 포함한다.
- 승강로 깊이(D)에 따라 제조사별로 필요시 카웨이트 레일설치를 위한 배면빔을 견적에 포함한다."

- 6.18 엘리베이터 내부 매립형 정보표시모니터를 견적에 포함한다.
- 6.19 당 현장은 소방 제연설비의 가압용 승강로 구조이며, 이에 대비하여 주행 케이블의 흔들림, 승강로 문 안닫힘 현상 등 예상되는 하자 방지를 위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해야하며, 대책방안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2.8 현장 여건 상 공종별로 작업범위, 공사물량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분할공사가 예상됨으로 해당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공사내역에 포함하여 견적하고, "수급사업자"는 작업구간마다 "원사업자"의 동별 담당자 및 타공종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투찰시점에 예상가능?)
- 6.2.10 공사 수행 전반에 걸쳐 관계 관청 인허가 업무에 성실히 협조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및 이윤" 에 포함하여 투찰한다.
- "6.5 타일 및 석공사
- 2) 타일 및 석재의 접착제는 첨부된 "원사업자"의 기준과 시방서를 비교해 시공 전 최종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되, 해당 비용은 00내역에 포함한다."
- 6.10 당해 사업수행 시 "수급사업자"이 반입하거나, "수급사업자"의 필요에 의한 자재의 각종 시험비는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견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 "6.1. 전기공사 일반사항
- 4)"수급사업자"는 당해 공사 수행 시 시험의 방법 및 횟수는 표준시방서, 기타 특기시방서, NFSC(화재안전기준) 에 따르며 "수급사업자"의 공급범위 자재의 경우 공사수행에 관련된 시험비는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견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급자재 제외)"
- 7) 건축공사 중 조적부 박스거치용 SUPPORT는 공정진행상 5개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시 충분한 수량을 반 영해야 한다.
- 8) 세대 외벽 부위 매입시공은 포스코건설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단열재 노출 및 단열박스 시공)
- 5.13.69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와 동시에 인증명판을 발부 받아 "원사업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른 설치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본 견적 시 포함하여야 한다.
- 5.13.74 방화구획재는 양면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건축도면을 참조하여 처리부위 두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한다.("수급사업자"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보수토록 한다.) 5.13.87 야간작업시 타워 크레인 이외의 "수급자업자"의 필요로 하는 조명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 5.13.88 건축공사 중 조적부 박스거치용 SUPPORT는 공정진행상 5개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시 충분 한수량을 반영해야 한다.
- 6.20 공침동 상부 옥외 누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작업 타설이며 내역에 포함한다.
- "6.1.12 현장 부지가 협소하여 "수급사업자"의 가설건물(사무실, 창고) 배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므로, 공사진행 중 수시로 이동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찰한다. 다만, 사무실용 가설건물의 경우 수시 이동 배치가 어려울 수 있어 "원 사업자"는 현장내 수급사업자용 사무실은 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 3x9(3개) 현장내 공개공지 배치 가능하다.

- (※ "수급사업자"가 현장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견적에 반영한다.)"
- 6.10.10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작업장 보양조치 및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6.10.12 양수, 청소관리기준: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수작업은 토목업체로부터 "수급사업자"로 이관되며, 골조 공사 완료시까지 골조구간내의 양수작업과 청소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한다.
- 6.10.22 콘크리트 타설용 CPB OPEN부위는 Master 인양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견적(거푸집 설치포함)에 포함하도록 한다.
- 6.10.23지하층 역타용 가설 철골 기둥 및 보 제거(절단은 철골업체 수행) 후 주변 할석, 미장 마감을 포함하여 견적한다.

"6. 8 (중략)

따라서, 지하 철거로 인한 장비 대기료 및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간접비포함)은 절대 없음을 알려 드리며, 견적시 철거공사 기간 각 A,B존 합계 Workkig Day (140일, 주 6일 기준), 존별 70일임을 감안하시여 견적 바랍니다."

"6.1.1 일반사항

- 7) 리프트카는 첨부 가설계획을 참조하며, 동/코어별 양중 시간, 인력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리프트카는 각 호기 1층~지붕층 운행 기준이며, 자재야적장은 지하1,2층에 배치 예정이므로 현장내 지게차 소운반을 고려하여야 함 / 102(3호기),103동(4호기)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되며, 104동(6호기),
- 105동(8호기), 106동(10호기), 108동(14호기), 109동(15호기), 110동(18호기), 111동(19호기)는 지하2층에서 리프트카가 시작되므로 별도의 소운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역에 반영할 것"

"6.1 공통사항

- 8) 공사중 발생하는 고동(동관 등), 고철(배관류)은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수급사업자가 이동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환수비는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6.1.2 "수급사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Shop DWG, 장비에 대하여서 시방서 및 도면에

충족하는 제품으로Form 4025를 작성, 제출, 승인까지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시방서 조건에 따라 외자재 사용시시공 일정을 감안하여 자재 승인 및 반입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6.3 철골 설치

- 33)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구조검토서 비용 반영(면외좌굴검토, 가설와 이어검토, 셔클 및 러그검토 등)"
- 6.26. 낙석방지울타리 기초가 수로형 측구 및 옹벽 등 다른 구조물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울타리 기초 및 결합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후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조검토서 작성 및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6.27. 터널 갱구부, 깎기비탈면 등 사면상부에 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시공시 자재 운반(소운반 포함) 및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6.28. "수급사업자"는 공사 수행시 모든 시험의 방법 및 횟수는 해당 공사 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공급범위 자재의 경우 공사수행에 관련된 각종 시험비는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입찰시 각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6.1.1 현장관리자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소장) 1인, 공무관리자 전담 1인, 시공관리 책임자 2인, 안전관리자 전담1인(자격요건 필)등 5명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대리인과 공무관리자는 당사의 행정 유 경험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 반장 1인을 별도투입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유지를 위한 특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인원의 추가 필요 발생시 혹은 "원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원을 추가 배치 하여야 한다."

6.2.10 인원, 자재, 장비의 부대내 출입 및 에스코트관련 소요비용은 투찰 시 "을"의 부담으로 단가에 반영하여 견적 한다.

"6.1공통사항

- 18) 당 현장은 호이스트를 포함한 일체의 양중 장비 지원은 없으므로 이를 단가에 포함 견적한다. (T/C, L/C 없음)" "6.5 보양 및 해체
- 1) 시공후 타 부재와 근접한 부분, 코너부위 및 이통 통로를 즉시 보양하며, 이에 따른 재료비 및 시공비, 해체비 일체를 포함 견적해야 한다."
- 6) 외부석재의 두겁석재는 시공완료 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조치하고 이에따른 시공비, 해체비 일체를 포함해 견적해야 한다. (유리난간대 간섭부위 포함)
- "6.6 외부비계공사 및 가설공사

11) 비계공사 사항

- D. 시스템 비계 설치 시에는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견적 한다.
- 고소작업 시 반드시 안전벨트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수급사업자"이 설치한 후 고소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6.8 수급사업자의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다.
- 5) PBD, SCP공사는 배포된 예정공정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일별 시공량을 준수하기 위해 적정 장비를 투입한다. 만약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혹은 일별 시공량 미준수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시 추가장비투입를 투입하여 공정만 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추가정산은 없다."
- "6.2가설 공사 및 공통사항
- 2) 공사 수행상 필요한 가시설 비용 (장비사용, 틀비계설치, 해체 및 정리, 작업발판 등) 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견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 "6.3 미장공사
- 7) 화장실의 휴지걸이 후면에는 미장 작업전 매쉬를 설치하고 자재는 "을"의 부담으로 할 것"
- "6.4.2 시멘트 벽돌
- 12) 줄눈 양생 전 줄눈 면정리 및 청소 일체 포함"
- 21) 층고 4.2M 이하 부위는 이동식 틀비계(BT 비계), 4.2M 초과 부위는 작업을 위한 가시설(쌍줄비계, 발판포함)을 "을"의 부담으로 포함하여 투찰한다.
- 6.1.5 "수급사업자"는 Master schedule 대비 공정지연이 1주일 이상 발생 시 일일 공정지연 만회 계획을 "원사업자"에 제출하고 일일 공정회의에 참석하며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장비, 인력을 투입하여 공정지연을 만회한다.
- 6.1.5 "수급사업자"는 Master schedule 대비 공정지연이 1주일 이상 발생 시 일일 공정지연 만회 계획을 "원사업자 "에 제출하고 일일 공정회의에 참석하며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장비, 인력을 투입하여 공정지연을 만회한다.
- 6.1.3 계약내역에 관련된 현장 내 정리정돈 및 청소요원배치, 장비 및 자재 반출입시의 교통통제원의 추가 비용은 투찰 시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견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 6.1.5 "수급사업자"는 Master schedule 대비 공정지연이 1주일 이상 발생 시 일일 공정지연 만회 계획을 "원사업자"에 제출하고 일일 공정회의에 참석한다.